

풍양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5. 12. ~ 5. 15.(4일간)
-  감사범위 : 2013. 5. ~ 2015.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39건(주의 7, 시정 10, 현지시정 22)
 - 본 처분 17건(주의 7, 시정 10)
- 재정상 조치
 - 7건 4,426,120원
(회수 4건 367,790원, 지급 2건 283,130원, 부과 1건 3,775,200원)

주요지적사항

1. 청사 보안 점검 소홀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도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3년 3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세출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미 실시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시 〇〇〇에 대하여 연가일수 착오계상으로 55,000원 과다지급, ㄱㄱㄱ에 대하여는 223,130원 과소지급

▶ 과다지급한 55,000원은 회수하고 과소 지급한 223,130원은 지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3. 재활용품수집판매대금 납부 지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 납입)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을 수납하면서 11건 1,723,800원을 지연 납부

▶ 세외수입 수납금은 징수일 다음날까지 세입처리를 완료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4. 읍면예산 및 재배정 현금출납부 불일치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06조(출납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하고, 제120조(세입세출일계표)군금고지출 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 하고 군금고 지출 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세입 세출일계표에 의한 현금출납부의 일일결산을 소홀히 하여 통장잔액과 현금 출납부 불일치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5. 공사비 과다계상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 기준,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2013. 8. 19 ~ 2013. 9. 30 까지 ■■■■ ○○○과 계약하여 시공한 □□□ 배수로설치 공사 J형측구 배수공 설치 시 2m 간격으로 설치토록 설계 하였으나 내역서 작성시 J형측구 전체연장(75m)으로 계상하여 배수공 뒷채움 쇄석이 과다계상 되었으나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합계 140,000원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4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 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6. 공사비 과다계상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 기준,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2013. 5. 27. ~ 2013. 7. 10 까지 ●●●● ○○○과 계약하여 시공한 □□□ 배수로응급 복구공사 석축 찰쌓기 기초공사에 있어 설계도서에는 암터파기로 설계 되었으나 현지여건상 암파쇄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암터파기로 설계 계상되어 공사비 합계 170,000원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7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 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7.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 미수립

- 재무과-804(2014.10.1.)호 「2014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계획 통보」 및 재무과-20501(2015.12.29.)호 「2015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계획 통보」에 의거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통보 하였으나, 2014년도 제3차 및 2015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 미 수립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8.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통보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종합민원과-43934(2012.12.13.)호에 따라 인감증명대리발급 시 본인에게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즉시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풍양면 ◎◎◎ ○○○ 외 2명에게 인감증명대리발급 사실 미 통보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9. 주민등록 일제정리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하면 군수는 매년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종합민원과-18676 (2013.5.28.) 호, 종합민원과-17041(2013.11.8.)호, 종합민원과-9166(2014.3.4)호로 시행한 주민등록일제정리 출장복명서 조사방법에 주민등록된 자에 대한 거주여부 확인을 하라고 되어있음에도, 2013년 12건, 2014년 3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불임자료인 세대명부에 세대주 및 이장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담당공무원 또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 소홀
▶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0.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위반자 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2013년 ~ 2015년까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25명 3,775,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부과 누락된 과태료 대상자 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1.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부적정

- 환경보호과-13189(2006.08.08.)호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 전·출입사실이 없는 전입자(군 관내 읍·면간 전입자 제외)에 대하여 전입인원에 관계없이 전입 신고 시에 200ℓ를 일시지급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00길 □□□에 대하여 예천군 관내 전입임에도 200ℓ를 지급하는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관리 소홀
▶ 오류 지급된 쓰레기종량제봉투 200ℓ를 회수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지도 소홀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환경관리과-3225(2013.01.29.)호에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화조 수질개선을 위하여 계획된 기간내에 청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청소계획 1개월전에 정화조 청소 이행 통지엽서를 발부하고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점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안내엽서 발송이후 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미이행 및 장기 상습 미 청소대상자에 대하여 독려를 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
- ▶ 미이행자에 대하여 독촉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 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3.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관리 소홀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4년 노인일자리에서 2015년 노인 사회 활동(노인일자리)지원으로 변경하여 자율적 시간선택형사업으로 더 많은 노인에게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제도 개선했음에도, 2015년 현재까지 시간선택형 자율참여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시간선택형 노인사회활동사업 홍보 안내가 미흡 하였고,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노임을 지급함에 있어 참여자 ○○○에 대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인 및 노임지급대장에는 6일의 120,000원을 확인하고 풍양면-4791(2015.04.30.)호의 지급내역에는 60,000원 지급
-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에 대하여 미지급금 60,000원을 지급하고, 시간선택형 노인사회활동사업을 적극 홍보 안내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4.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 매년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안내에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는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총 2번 실시하고,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도 병행 실시하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3회 통보된 ○○○ 외 11 가구, 2015년 1회 3가구에 대하여 6개월 내에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 상담지를 작성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관리 소홀
- ▶ 대상자에게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 상담지를 작성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후관리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5. 기초생활수급자(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부적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사무능력자 급여의 관리·사용문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나,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분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 작성 및 급여지출 내역·증빙서류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급여가 수급자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과 급여 관리지정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점검·관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길 ○○○에 대하여 2013년 6월, 9월, 2015년 3월 분기별 점검시 급여지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특히 급여관리 지정자가 아닌 타인(동생)과 업무담당자가 1일 1,861,700원을 지출하는 등 급여 관리 소홀

▶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6. 구제역백신 보관용 냉장고 관리 소홀

-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인한 백신 수급관리를 위하여 백신보관용 냉장고를 군에서 공급하여 구제역 백신 안전관리와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 1월 구제역 백신보관용 냉장고를 군에서 공급받아 백신을 안전 보관 하여야 하나 백신 외 음료수, 식품, 기타 물품과 혼용 보관하여 구제역 백신 보관관리 소홀

▶ 구제역 백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7.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 소홀

- 대규모 벼 재배단지(농가)의 못자리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벼 육묘공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일정기간 사후관리토록 사업시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벼 육묘공장 지원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1~2014년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관리대장 미기록 하는 등 육묘공장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

▶ 시설설치완료 익년부터 10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